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혜택과 부가가치세 실무

한국농수산대학교 | 농업경영인을 위한 세무 강의

강의 목차

- 01 농업소득의 비과세와 농어가부업소득
- 02 8년 자경농지·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 03 농업법인의 세제혜택
- 04 농산물 판매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 05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사후환급 및 세무 실무

농업인이 접하는 세금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농지 취득: 취득세 / 보유: 재산세 / 양도: 양도소득세
- 농업소득: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판매: 부가가치세
- 승계: 증여세·상속세 (지난 강의와 연계)
- 비과세: 법에서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농업인이 접하는 세금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감면: 산출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 면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 영세율: 과세거래에 0% 적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수입금액·소득금액·업종 구분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수입금액(매출액): 농산물 판매대금 등 총수입
-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연간 수입금액 10억원’은 순이익 10억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직접 재배한 작물 판매: 작물재배업 소득 여부 확인

수입금액·소득금액·업종 구분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매입 농산물 재판매: 도·소매업 소득 검토
- 잼 제조: 제조업 소득 / 체험 운영: 서비스업 소득
- 사업자등록 업종명보다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 작물재배업 소득세 비과세라도 농산물의 부가세 면세 판단은 별도

작물재배업 소득 비과세의 법적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일정 작물재배업 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 범위
- 식량작물재배업과 기타 작물재배업의 구분도 확인합니다.
- 직접 경작·재배하여 수확한 작물의 판매소득이 핵심

작물재배업 소득 비과세의 법적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채소·과실·화훼 등은 작물재배업에 해당할 수 있음
- 타인 농산물 매입·재판매와 가공식품 제조는 별도 업종입니다.
- 과세기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 기준을 확인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처리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10억원을 넘으면 모든 매출액에 곧바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아님
-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하고 필요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
-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처리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별도 비과세 규정 적용
- 농산물 판매와 농산물 가공업은 구분
- 복합영농 시 업종별 장부 구분이 필요합니다.

작물재배업 증빙 관리

- 출하명세서·거래명세서·정산서·입금내역 보관
- 재배일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작물별 생산내역 관리
- 가공·체험 등 부수사업 매출은 구분 기록

사례 | 딸기농장 8억원과 12억원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직접 재배한 딸기 판매 매출 8억원 / 필요경비 5억원
- 기타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매출 8억원과 순이익 3억원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례 | 딸기농장 8억원과 12억원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직접 재배한 딸기 판매 매출 12억원 / 필요경비 7억원
- 10억원 초과 여부와 과세소득 계산 방법을 별도로 확인
- 과세표준을 '매출 12억원'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 직접 재배와 매입 판매

- 자가 재배 딸기 3억원 + 매입 딸기 재판매 2억원
- 두 거래의 사업소득 분류와 장부를 구분
- 같은 '딸기'라도 소득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및 시행령 제9조 적용
- 시행령의 농어가부업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등과 그 밖의 부업소득을 구분
- 축종별 규모기준과 소득금액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한우·양돈·양계 등 축산업 소득에 작물재배업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농어가부업 비과세 규모 및 소득금액 한도 검토
- 축산업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농가의 실제 축산업 영위 여부
- 축종별 사육규모가 시행령 별표의 범위에 드는지

사례 | 한우 사육 농장

- 한우 80두 사육, 연매출 3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여부 확정 불가
- 축종별 기준 사육규모와 소득금액 산정 필요
- 실제 사육두수·출하자료·사료비 장부를 확인

사례 | 딸기 판매·체험·잼 제조

- 생딸기 3억원 / 수확체험 5,000만원 / 잼 5,000만원
- 작물재배업·서비스업·제조업 수입을 구분
- 비과세 기준을 전체 사업 매출에 일괄 적용하지 않음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전체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건 충족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 ‘100% 감면’은 감면대상 세액에 관한 규정
- 연간·다년간 감면 종합한도는 별도 적용
- ① 농지 소재지 재촌 ② 8년 이상 직접 경작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전체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③ 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 ④ 양도 당시 요건 충족
- ⑤ 도시지역 편입 등 제외·제한 규정 검토
- ⑥ 감면신청 및 증빙 확보

재촌 요건 | 같은 지역·연접·직선 30km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에 거주
- 주소지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 중요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과 규정도 존재
- 농지 소재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맞닿은 시·군·구에 거주

재촌 요건 | 같은 지역·연접·직선 30km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연접지역은 거리와 별개의 대안 요건
- 실제 주소와 경작기간을 함께 확인
- 농지로부터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
- 자동차 주행거리 30km가 아닙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와 8년 계산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
- 농기계 이용 자체가 자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노동 입증 필요

직접 경작의 의미와 8년 계산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 직접 경작한 기간 중심
- 보유만 한 기간·임대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경기간이 아님
- 상속농지 등은 별도 기간 통산 특례 확인

양도 당시 농지 요건

- 지적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현황이 중요
- 경작하지 않는 나대지·건축물 부지 등은 농지 인정에 문제
- 일시적 휴경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8년 자경 감면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해당 유형 감면액의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 검토
-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 등 종합한도도 별도로 적용
- 감면율 100%와 무제한 감면은 다릅니다.

8년 자경 입증자료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등 공적 자료
- 농자재 구입·농기계 사용·작물 판매 내역
- 직불금 수령자료·재배일지·농업 관련 금융거래

8년 자경 입증자료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농지와 거주지의 위치·거주기간 증빙
- 농작업 사진·작업일지·출하내역의 연속성
- 단일 서류보다 여러 객관적 자료의 일치가 중요

사례 | 보유기간과 경작기간

- 10년 보유 중 6년 직접 경작, 4년 임대
- 원칙적으로 8년 자경 요건 미달
- ‘소유 10년’만으로 감면되지 않음

사례 | 직선거리 28km

- 직선거리 28km, 자동차 이동거리 43km
- 직선거리 30km 이내 요건을 우선 검토
- 8년 직접 경작·농지요건까지 충족해야 감면 가능

농지대토 감면의 전체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시행령 제67조
-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
- 종전·신규 농지 모두 거주·경작 요건 충족 필요
- 종전 농지: 원칙적으로 4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대토 감면의 전체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새 농지: 법정 기간 내 취득 및 경작 개시
- 면적 또는 가액 요건 충족
- 종전+신규 경작기간 합계 8년 이상
-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

농지대토 | 취득·양도 시기

-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신규 농지 취득
- 수용 등 법정 사유는 2년 기한 규정
- 신규 농지 취득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경작 개시

농지대토 | 면적·가액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새 농지 면적 ≥ 종전 농지 면적의 2/3
- 면적 요건 또는 가액 요건 중 하나 충족 가능
- 면적은 등기·지적 자료로 확인

농지대토 | 면적·가액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새 농지 가액 ≥ 종전 농지 가액의 1/2
- 면적 요건을 못 채워도 가액 요건으로 검토 가능
- 가액 비교에 사용할 법정 기준과 증빙 확인

농지대토 | 합산 경작기간과 사후관리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신규 농지 경작기간 합계 8년 이상
- 종전 농지 4년 자경 후 새 농지 4년 경작하는 구조 예시
- 사후 경작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추징 가능

농지대토 | 합산 경작기간과 사후관리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새 농지 취득 후 실제 재촌·자경 여부 점검
- 새 농지 처분·전용·임대 시 감면 유지 여부 확인
- 계약서·등기·농업경영체·출하 자료 보관

사례 | 농지 면적 변경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새 농지 면적 1,500㎡ / 기존 2,000㎡ = 75%
- 2/3 이상 면적 요건 충족
- 다만 기간·재촌·자경·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함

사례 | 농지 면적 변경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새 농지 면적은 50%로 2/3 요건 미달
- 새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의 1/2 이상이면 가액요건 검토
-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농업법인 종류와 세제혜택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조직형태·설립요건이 다름
- 세제특례는 법인 명칭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음
- 농업 관련 사업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일정 농업소득 법인세 면제·감면

농업법인 종류와 세제혜택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기타 소득의 적용구조 구분
- 법인·조합원 요건 및 적용기한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일정 농업소득 법인세 면제·감면
- 식량작물재배업과 그 밖의 작물재배업 등 소득 구분

농업법인 세제혜택 비교 | 조특법 제66조·제68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특례를 소득 유형별로 비교

비교 항목	제66조	영농조합법인	제68조	농업회사법인
적용 법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전액 면제	법인세 전액 면제
그 밖의 작물재배업 등	식량작물 외 소득 중 시행령상 범위 면제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소득 중 시행령상 범위 면제
작물재배업 외 소득	시행령상 면제 범위 확인	시행령상 해당 소득 법인세 50% 감면 (정해진 기간)
배당소득 특례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령 기준. 면제·감면 범위 및 배당소득 특례는 시행령상 한도·요건을 적용합니다.

농업법인 감면을 받기 위한 실무

- 정관·법인등기·사업자등록·실제 사업내용 일치 여부
- 농업소득과 가공·유통·체험 매출의 구분경리
- 감면신청서와 계산명세서 등 법정 서류 제출

개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비교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개인: 소득세 비과세 특례 검토 / 법인: 법인세 감면 특례 검토
- 법인 이익을 대표자가 인출하면 급여·배당 등 별도 세금 발생
- 투자·고용·승계·책임 범위까지 함께 비교
- 농업경영 규모와 향후 투자 계획

개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비교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농산물 판매 외 제조·유통 매출 비중
- 대표자 급여·배당·4대보험 등 비용
- 감면 종료 후 세부담도 비교

사례 | 딸기농장 법인 전환

- 개인 딸기 판매 매출 8억원 → 농업회사법인 설립
- 개인 작물재배업 비과세를 법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법인세 감면 및 대표자 소득세를 각각 계산

부가가치세의 기본 계산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에 10% 세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면세거래는 매출세액이 없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부가가치세의 기본 계산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금액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 과세거래 공급대가 11,000원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과세·면세·영세율 비교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과세: 매출세액 발생·매입세액 공제 가능
- 면세: 매출세액 없음·관련 매입세액 원칙적 불공제
- 영세율: 세율 0%·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과세·면세·영세율 비교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농산물 면세판매용 시설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공제 불가
-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은 별도 특례로 검토
- ‘면세사업자 = 모든 부가세 환급’은 잘못된 설명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사업 관련 매입인지 확인
-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
- 면세사업 관련·비영업용 등 불공제 대상 제외

사례 |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 가공품 공급가액 1,000만원 → 매출세액 100만원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60만원
- 납부세액 40만원 (다른 조정사항 없다고 가정)

미가공 농산물 면세의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
- 국내산 미가공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
- 품목·가공정도·공급형태에 따라 개별 판단

미가공 농산물 면세의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가공
- 세척·선별·건조·냉동·포장 등은 구체적 품목 기준 확인
- 가공이라는 말만으로 일괄 과세하지 않음

가공식품과 체험서비스 과세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잼·소스·음료 등 제조로 본래 성질이 바뀌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과세
- 품목별 별도 면세규정이 있으면 예외 검토
- 제조공정·원재료·상품표시를 함께 확인
- 직접 재배 생딸기: 부가세 면세

가공식품과 체험서비스 과세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매입한 생딸기를 그대로 재판매: 원칙적으로 면세
- 소득세상 작물재배업인지 도·소매업인지는 별도 판단
- 잼·음료 제조판매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 매출 가격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계약

온라인 농산물 판매

- 판매 채널(오프라인·온라인) 자체가 면세 여부를 바꾸지 않음
- 판매 물품이 미가공 농산물인지 가공식품인지가 핵심
- 플랫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 확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생딸기 면세 + 딸기잼 과세를 동시에 영위
- 매출과 매입을 과세·면세별로 구분
-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에 따라 안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과세·면세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은 매입세액 안분 대상
-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 등 법정 기준 적용
- 직접 귀속되는 매입은 해당 사업에 우선 배분

사례 | 생딸기와 딸기잼

- 생딸기 판매 1만원: 면세
- 딸기잼 부가세 포함 판매가 1만원: 공급가액 약 9,091원 / 세액 약 909원
- 같은 원재료라도 공급하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름

사례 | 면세 2억원·과세 8천만원

- 생딸기 면세 매출 2억원 / 가공품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 가공품 매출세액 800만원 (10% 가정)
- 공통 시설 매입세액은 법정 비율에 따라 안분

사례 | 온라인 판매

- 생딸기 온라인 판매와 딸기청·잼 판매 병행
- 상품별 과세·면세 코드를 구분
- 정산자료·수수료·배송비 거래의 성격 확인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특례규정
- 법정 농민에게 공급하는 지정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영세율
- 농민 자격·물품 종류·사용목적이 모두 중요
- ① 법령상 공급대상 농민에 해당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② 지정된 영세율 대상 품목
- ③ 농업용 실제 사용 목적
- ④ 공급자가 적격증빙·확인서류 확보
- 공급가액 100만원인 지정 기자재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요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법정 농민이 지정 기자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
-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별도 신청하여 환급
- ① 법령상 농민 등 자격 충족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요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② 특례규정 별표 5의 지정 기자재
- ③ 실제 농업용 사용
- ④ 적법한 세금계산서·신청서류 및 기한 충족
- 농업용 필름·파이프·포장재 등은 품목별 지정 여부 확인

농업용 기자재 사후환급 | 대표 품목

조특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 (2026. 2. 27. 개정)

시설·피복	농업용 필름과 지정 부속자재, 농업용 파이프, 작물재배용 부직포
포장·과수	종이재질 농산물 포장상자, 곡물용 PP포대, 과일 봉지
재배·환경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지정 차광망
농기구·설비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축산 분야	조사료 생산용 필름, 축산업용 톱밥, 축사세척기 등 지정 품목

※ 모든 유사 제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별 용도 제한과 별표의 세부 규격을 확인하고, 농민 자격·세금계산서·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과 사후환급 차이

- 영세율: 공급 단계에서 부가세 0% 적용
- 사후환급: 구입 시 부가세 지급 후 요건 충족 시 환급
- 한 거래에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하는 구조가 아님

사후환급 신청기한·서류·절차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 환급대행자를 통한 신청의 법정기한
- 구입일·분기·신청서 접수일을 관리
- 품목·수량이 구분된 세금계산서

사후환급 신청기한·서류·절차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환급대행신청서 및 추가 확인자료
- 기자재 구입 → 세금계산서 수취 → 품목·농민 요건 확인
- 환급대행기관 신청 → 세무서 환급 심사 → 지급

스마트팜 투자비 검토

- 시설공사비를 자재·장비·설치용역으로 세분화
- 개별 자재가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별표에 있는지 대조
- 단순히 '스마트팜'이라는 명칭만으로 혜택 확정 불가

사례 | 농업용 필름 환급

- 공급가액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 해당 필름이 환급대상이고 농민·서류·기한 요건 충족 시 50만원 환급
- 일반적인 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와 다른 제도

사례 | 스마트팜 1억원 투자

- 총 시설투자 1억원 중 기자재별 품목 구분 필요
- 환급대상 지정 자재만 별도 검토
- 시설 전체 부가세 10%를 일괄 환급받는다고 설명하면 안 됨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 계산서: 면세거래 증빙 / 세금계산서: 과세거래 증빙
- 생딸기 면세 공급과 딸기잼 과세 공급을 구분
- 전자발급 의무 여부는 사업자 유형·규모별 확인

농업인 사업자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과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별개
- 면세 농산물 판매·가공품 제조·체험업을 구분
- 사업장별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등록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 의무

핵심 개념과 적용 기준

-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등 의무 검토
- 겸영사업자는 과세·면세 매출을 함께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 의무

적용 방법과 확인 사항

- 일정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농업인 중 신고대상·제외대상은 사업형태별 확인
- 면세라고 신고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음

농업경영 세무장부

- ① 매출·출하내역 ② 매입·농자재 내역 ③ 보조금 내역
- ④ 농지·시설 취득자료 ⑤ 농작업·경작 증빙
- 세금 감면은 사후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평소 기록이 중요

종합사례 | 청년 스마트팜

- 생딸기 매출 4억원 / 딸기잼 매출 1억원
- 기자재 5,000만원 구입 / 농지 10년 후 양도 계획
- 소득세 비과세·부가세 면세/과세·환급·자경 감면을 각각 판단

종합사례 | 적용 요건 해설

- 생딸기: 작물재배업 비과세·부가세 면세 요건 검토
- 딸기잼: 제조업 소득·부가세 과세 및 공제 검토
- 기자재: 지정품목·농민자격·세금계산서·기한 확인
- 농지: 8년 재촌·자경·직선거리 30km 등 요건 입증

핵심 정리

- 비과세·감면은 법정 숫자와 기간·거리 요건을 정확히 확인
- ‘8년 자경’은 8년 소유와 다름 / ‘30km’는 직선거리
- 농산물 면세와 가공품 과세는 구분
- 기자재 환급은 대상 품목·세금계산서·신청기한이 핵심

주요 법령과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제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66·68·69·70·105·105의2·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67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농·축산 기자재 특례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